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9월 14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9월 5일, 이인식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9월 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3년 9월 14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- 가. 제안이유
 -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다양한 장애인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조례의 목적 및 기금의 설치 (안 제1조~제3조)
 - 기금의 조성 및 운용 (안 제4조 ~ 제8조)
 -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(안 제9조)
 -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해촉 (안 제11조 및 제1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- 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-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2) 주요 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기금의 설치 (안 제1조~제3조)
 - 기금의 설치(안 제2조)
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에 따라 기금 설치 근거를 규정함
 - 존속기한(안 제3조) : 2028년 12월 31일까지
- 기금의 조성 및 운용 (안 제4조~제8조)
 - 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, 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 등을 규정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(안 제9조)
-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해촉 (안 제11조 및 제12조)

다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에 따라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활용할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이며 조례의 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기금의 용도 중 장애인회관 건립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보다 면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
- 입법 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된 기금운용위원의 구성, 기금 예산 비율 적용에 관한 내용은 본 기금 조례의 설치 목적 및 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,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입법예고 기간 의견제출

- 단체명: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(센터장 황석재)

○ 의견제출

의견 내용
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에 성별에 대한 단서조항처럼 위원회 구성에 당연직 외의 위원 중 과반수는 장애인당사자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.
기금의 존속기간까지 지원되던 사업들이 일반회계로 편입될 때 계속 실시 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노력이 필요함을 규정에 포함 요구
장애인복지기금에서 장애인 회관 건립 및 운영 예산의 비율을 정하는 등 다른 복지사업과 균형있게 지원하기 위한 조항이 필요해 보임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